의 안 번 호	제 114 호
의결 연월일	1999. 9. 1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 9. 6 예산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9. 10

다. 상 정 일 자 : 1999. 9. 15
제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환경보호과장 : 이하창)

가. 제 안 이 유

○ '95. 12. 1 당초에 4개년('95~'98)동안 5,824백만원의 계속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 '97. 9. 11에 사업비 1,612백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1차로 총 사업비 7,436백만원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 지시에 의거 '98. 2. 16일자로 '99. 3. 17까지 공사 중지를 하여

○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2차로 '98. 12. 8에 사업비 1,069백만원의 감소 및 1999년도까지 1년동안 공사기간 연장 및 총 사업비 6,367백만원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 공사소요기간이 18개월인데 '97. 12. 2부터 '98. 2. 16 공사중지 전까지 2개월 공사를 진행하여 남은 기간 16개월로서 '98년도에 1년간만 공기연장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설계도서상 공기 부족기간 4개월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 2000년도까지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1999. 3. 18에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2000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함.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이원용)

○ 본 동의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2000년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연장이유가 공기부족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